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38
----------	----

제안년월일 : 2010년 8월 13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 1. 주 문

- 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바, 이를 개선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서울시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한 헌법기관이자, 시민 대표기관, 최고의결기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권, 예산 심의·확정권, 행정사무 감·조사권, 청원 처리권, 의견 표명권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역대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보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정방향 설정과 사업추진을 정당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의회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그 위상과 역할수행에 있어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음.
- 이에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천만 서울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정방향 설정과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사후에 단순 추인하는 거수기로 본연의 역할을 축소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지방의회무용론”이 제기되고 “통법부(通法府)”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지방의회 출범 20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역대 의회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 넘어 서울시의회가 시민 중심적인 서울시정을 이끌어 내는 실질적인 견인차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의정역량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의정역량강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10. 8.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